

(별표 #1)

제1종 피해물과 제3종 中 자동차가 아닌 피해물 기본보수표

종목	손해사정액	요율(%)	기준액(원)
제1종 피해물 / 제3종 피해물 中 자동차가 아닌 경우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1,012,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254,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87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2,882,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	4,4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5,814,1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8,03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12,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11	2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02	30,690,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91	45,65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4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가산	

Tip) 1. 제3종 보험종목사고로서 손해액 100만원이하의 대물배상책임(소액대물)등 단순 현장조사 및 경우에 대한 보수는 별표1의 손해사정 보수표에 관계없이 기본수수료의 50%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2.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차하위 기준액 적용함

(별표 #2)

외산 이륜차(자전거) 포함 기본 수수료

손해사정 금액	보수 인정금액		비고
최저 수입료	80,000원		보험금 손해사정시 적용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20,000원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80,000원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50,000원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50,000원 + 손해절감액의 7%	최고 80만원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450,000원 + 손해절감액의 7%		
3,000만원 이상			
Tip) 위장사고 적발시 보수금액 x 1.5배			

Tip) 손해사정금액이란

- ① 손해사정인 작성 날인한 손해사정 보고서상의 사정금액
- ② 과실상계 전 금액기준(간접손해 비용 제외)

레거츠 3종

(별표 #3)

선임 손해사정사 여비 · 교통비 지급기준

교통비				
산 출 근 거	KTX	충청권	실비	대전역 일반실 왕복요금
		영남권		부산역 일반실 왕복요금
		호남권		목포역 일반실 왕복요금
	항공기	제 주	실비	제주공항 아시아나 항공 일반석 왕복(평일)
	고속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승용차	출장도시	유류대 통행료	-
	숙박비		40,000원	1일당
일비		30,000원	식대(예비비 포함)	

Tip) 대한민국 내 선임손해사정사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소재 조사자가 시외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제1종 손해사정 보수기준 ('14년)

I. 손해액 기준방식

「Ⅱ.단순사고 적용방식」와 「Ⅲ.업무시간 기준방식」에 의하지 않는 모든 제1종 보험사고에 적용한다.

□ 손해사정 보수표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요율 가감산 요소		
			감산율	가산율	조사자 지정가산율
3백만원 미만	기본료	515,000			
5백만원 미만	-	669,500			
1천만원 미만	-	747,780			
~2천만원 미만	5.57%	1,113,200			10%
~3천만원 미만	4.60%	1,379,400			
~5천만원 미만	4.11%	2,057,000			
~1억원 미만	3.17%	3,168,000			
~2억원 미만	1.94%	3,872,000	-10%	+30%	
~3억원 미만	1.61%	4,818,000	-20%	+20%	
~5억원 미만	1.33%	6,655,000		+10%	
~10억원 미만	1.06%	10,640,000			
~20억원 미만	0.78%	15,680,000			20%
~30억원 미만	0.71%	21,420,000			
~50억원 미만	0.64%	32,200,000			
~100억원 미만	0.28%	별도규정			
100억원 초과	0.1%	별도규정			

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

선임 손해사정 보수 기준표

종 목	손해사정 금액	요 율(%)	기 준 액(원)	
이륜차	서울, 경기	미적용	250,000	
	지 방	미적용	300,000	
3종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	
	1천만원 ~ 2천만원	5.06	1,012,000	
	2천만원 ~ 3천만원	4.18	1,254,000	
	3천만원 ~ 5천만원	3.74	1,870,000	
	5천만원 ~ 1억원	2.88	2,882,000	
	1억원 ~ 2억원	2.20	4,400,000	
	2억원 ~ 3억원	1.95	5,841,000	
	3억원 ~ 5억원	1.61	8,030,000	
	5억원 ~ 10억원	1.27	12,650,000	
	10억원 ~ 20억원	1.11	22,220,000	
	20억원 ~ 30억원	1.02	30,690,000	
	30억원 ~ 50억원	0.91	45,650,000	
	50억원 ~ 100억원	0.4 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 가산		
		배상책임 약관담보	1.5배	해당사건 결정 손해액 보수기준
		사고조사 면책결정 사건	3배	
법정 분쟁사건	일반소송건의 손해사정	기본보수 30% 할증		
	의뢰사의 경영환경에 영향이 있는 사건 손해사정	당사자 협정 수수료		

- 주) 1.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기본표)보다 적을 때에는 차하위 기준액 적용함
 2. 외부손사 면책 결정 기여시 아래 각 항에 따른다.
 - 보상담당자는 외부손사의 면책 기여도를 외부손사와 협의 결정 후 면책 수수료 산정시 반영한다.
 - 위장사고 면책 수수료는 보험조사파트 지급기준액 또는 세부심사기준액 이하로 한다.
 - 여비, 교통비 별도 산정
 3. VAT 포함 금액임

선임 손해사정사 여비, 교통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항공임	실비
철도임	KTX(특실 제외)
선임	1등 정액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기타교통수단	실비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및 통행료
일비(식비포함)	30,000원
숙박비(1일당)	50,000원

- 주) 1. 대한민국내 선임손해사정인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같은 지역 중복 출장 시 교통비 1회 지급 제한
2.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일비, 숙박비는 1일당 금액임).
3.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실비를 정할 수 있다.
4. VAT 포함 금액임

1종 농형

손해사정업무 보수 기준

1. 재물보험/배상책임보험/가축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 보수기준표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 1백만원 미만	-	330,000
1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	500,000
3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6.60	660,00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1,012,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254,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87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2,88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	4,4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5,85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8,05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12,70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0.89	17,8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0.82	24,600,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73	36,50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4가산	-
100억원 초과 금액	0.2가산	-

※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 이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 을 말한다.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별표 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가)]

가. 외제자동차 및 기타대물 손해사정 기본보수표(이륜차 제외)

구분	현행 (정액보수)	변경					
		기본보수 (A)	삭감보수(B)		지급보수 (C = A+B)	지급보수한도	
			일반 : 15%미만 딜러 : 8%미만	일반 : 30%미만 딜러 : 15%미만			일반 : 30%이상 딜러 : 15%이상
500만원 미만	35만원	25만원	40,000원	80,000원	삭감액의 10%	원	60만원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50만원	30만원	80,000원	160,000원	삭감액의 10%	원	70만원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80만원	60만원	80,000원	160,000원	삭감액의 5%	원	100만원
2천만원 ~ 3천만원 미만	120만원	90만원	120,000원	240,000원	삭감액의 5%	원	150만원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180만원	130만원	200,000원	400,000원	삭감액의 4%	원	250만원
5천만원 ~ 8천만원 미만	230만원	160만원	250,000원	510,000원	삭감액의 4%	원	300만원
8천만원 ~ 1억원 미만	300만원	220만원	320,000원	640,000원	삭감액의 4%	원	400만원
1억원 ~ 2억원 미만	400만원	300만원	400,000원	800,000원	삭감액의 4%	원	500만원

(※ 삭감율이 일반정비공장 10%미만, 딜리공장 5%미만인 경우 기본보수만 지급)

나. 렌트카 손해사정 보수 : 청구액에 대한 삭감액의 30%이상 초과분(금호렌트카 70%기준)을 삭감보수에 포함 후 산정
 다. 미수선 수리비 : 기본보수의 80% 적용

라. 기타대물 : 위 “가”항의 보수표 적용하되 외제자동차를 포함하여 동 손해사정금액을 초과하는 건은 별도 협의한다.
 마. 위장사고 적발 면책시 : 건적금액의 10% 지급(출장(경)비 없음)

※ 손해사정금액 : 손해사정인 작성 날인한 손해사정 보고서상의 사정금액을 말하며, 이는 관실 공제 전 피해물의 사정 금액을 뜻하되 간접손해 중 단순한 휴차료 또는 대차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개인택시 공제 프로그램
 개인택시 공제 프로그램

[별표 1. 손해사정 기본보수표(나)]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가. 이륜자동차 손해사정 기본보수표

구분 손해사정금액	현행 보수	변경 보수
200만원 미만	7.0 %	120,000
200만원 ~ 500만원 미만		7.0 %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6.5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6.5 %	6.0 %
2천만원 ~ 1억원 미만	6.0 %	5.0 %
위장사고 적발 면책시	없 음	견적금액의 10 %(출장(경)비 없음)

나. 위 손해사정금액을 초과하는 건은 별도 협의한다.

다. 출장비는 [별표 2. 교통(경)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손해사정금액

: 손해사정인 작성 날인한 손해사정 보고서상의 사정금액을 말하며, 이는 과실 공제 전 피해물의 사정금액을 뜻하되 간접손해 중 단순한 휴차료 또는 대차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2. 교통(경)비 지급기준]

교통(경)비 지급기준

		교 통 비			
		산 출 근 거	KTX	충청권	48,000
영남권	90,000			부산역 일반실 왕복요금	
호남권	83,000			목포역 일반실 왕복요금	
항공기	제주		174,000	아시아나항공 일반석 왕복(평일)	
2차교통비	출장도시		30,000	출장지역->목적지 왕복 교통비	
숙 박 비					
1박		30,000	출장지 숙박 시 청구		
기 타 비 용					
식대	1식	5,000	1회 출장시 2식 기준 청구		

청 구 기 준	출장지	도 심 교통비	KTX 항공권	숙박비	식 대	합 계 (당일)	합 계 (1박)
	충청권	30,000	48,000	30,000	10,000	88,000	118,000
	영남권	30,000	90,000	30,000	10,000	130,000	160,000
	호남권	30,000	83,000	30,000	10,000	123,000	153,000
	제 주	30,000	174,000	30,000	10,000	214,000	224,000

※ 서울은 별도 교통비 없으며, 인천 및 경기지역은 2차 교통비 30,000원, 강원지역은 충청권에 준하여 산정함

[별첨 1. 협조의무 비용]

1. 협조의무 비용

계약서 제 12조(협조의무)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수도권을 1회 5만원을 그 이외의 지역은 10만원을 지급하되 1건당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붙임3]

보수정산 기준표

가. 3종대물 중 자동차가 아닌 특수피해물 보수기준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1,012,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254,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87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2,882,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	4,4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5,841,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8,03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12,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11	22,22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02	30,690,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91	45,65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4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가산	

주) 1.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또는 기본료)을 적용한다.

2. 보험사기를 입증하여 면책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손해사정금액을 별도로 정한 후 보수를 인정한다.

나. 손해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험금 사정업무만을 위탁한 경우 보수기준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적용기준
500만원까지	기본료	250,000	손해사정 금액은 과실상계 이전 금액기준 으로 적용 (간접손해 비용 제외)
5백만원초과 1천만원까지	4.5%	450,000	
1천만원초과 2천만원까지	3.6%	720,000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3.0%	1,500,000	
5천만원초과	2.5%	최고 1,800,000	

주) 1. 특수피해물을 제외한 수입이륜차, 자전거, 제트스키등 당사자간 협의 후 보험금 사정업무만 의뢰하는 피해물에 적용한다